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조계원 · 양부남
이연희 · 이상식 · 어기구
정혜경 · 김한규 · 윤종균
민병덕 · 박용갑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,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제1호 · 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).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19세”를 각각 “18세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전자서명요청 활동)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
2.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(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 철회 방법을 포함한다)

④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

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서명요청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.	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 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)	1.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<u>19세</u>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 재된 자	2.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0조의2(전자서명요청 활동) ① <u>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제9조제</u>

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 청구인대표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

2.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(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 철회 방법을 포함한다)

④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

려는 경우에는 서명요청 활동
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정보
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할
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서명요
청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
로 정한다.